

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(신규·갱신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개월
신청인	신청단위 [] 농업인, [] 개인·법인사업자, [] 영농조합, [] 협동조합, [] 농업회사법인, [] 기타		
	성명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대표자 성명(법인인 경우)	전화번호	
	주소		
신청내용	유형구분 [] 1×2차형(가공), [] 1×3차형(체험, 직거래 등), [] 1×2×3차형(복합형)		
	구분 [] 최초 인증 신청, [] 갱신(유효기간 연장) 신청		
사업계획	<붙임>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		

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 * 갱신의 경우, 사업계획서 외 의 서류는 변경 사항 있는 경우 만 제출	1. 사업계획서 1부 2.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(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) 3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) 4.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) 2. 사업자등록증(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, 한국농어촌공사,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,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(3년) 동안 보유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2.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(3년)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*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2.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.
3.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(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).
4.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, 개인·법인 사업자, 영농조합, 협동조합, 농업회사법인, 기타로 구분하여 √ 표시합니다.
5.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.
6. 유형은 제조·가공 중심인 경우 1×2차형(가공형), 체험·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×3차형(체험, 직거래 등), 제조·가공, 체험·관광,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×2×3차형(복합형)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7.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(신규)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(갱신)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